



제 424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설계사의 모집규제 완화 및 제제 합리화 등〉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09호)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06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 완화(김상훈의원안)	5
2. 보험설계사에 대한 가중제재 산정기간 신설(공통)	11
3.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 신설(공통)	16
4.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김상훈의원안)	20
5.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김상훈의원안)	26

I. 제안경위

1. 김상훈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1. 22.

다. 회 부 일 : 2025. 1. 23.

2. 강준현의원안

가.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2. 17.

다. 회 부 일 : 2025. 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상훈의원안

제안이유

현재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이외 이종(異種)의 업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보험의 경우에만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 다양한 제재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두어 상품특화 보험회사 등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제재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위하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5조제3항).

나. 보험설계사 가중제재처분 요건의 기산점을 5년으로 함(안 제86조 제1항·제2항).

다.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문책의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96조제1항).

마.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209조제1항).

2. 강준현의원안

제안이유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중 제재를 위한 기산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 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나.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 완화(김상훈의원안)

□ 개정안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그 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그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u>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보험업법」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함)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제85조제1항),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제85조제2항)하는 ‘일사 전속주의’를 택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와 다른 종류의 업종을 영위하는 1개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모집제도”를 허용하고 있음¹⁾.

[표 1] 보험설계사 일사전속주의 및 교차모집 허용 현황

보험설계사 소속		일사전속주의 적용	교차모집 허용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업
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	○	○
	생명보험회사	○	○	×	○
	제3보험업	○	○	○	×
보험대리점		○	×	×	×
보험중계사		○	×	×	×

-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디지털 보험시장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허가정책을 완화하기로 결정²⁾한 바 있음.

- 1) 「보험업법」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① 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험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2022. 11. 21.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업 등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제4조)³⁾, 하나의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규정(제10조)⁴⁾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허가정책의 일환으로 동일한 금융그룹 내에 각 1개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1사 1라이선스 규제의 예외로, 그룹 내 다른 보험사와 판매채널을 분리⁵⁾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만 추가진입을 허가한 사례⁶⁾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여 소액단기전문보험사⁷⁾ 또는 단종보험사⁸⁾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

3)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각목 생략) /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각목 생략) /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각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보험업법」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5) 예를 들어 기존 보험회사는 오프라인 판매채널만 운영하고, 새롭게 진입한 보험회사는 온라인 판매채널만 운영

6) 2013. 10. 30. 교보생명보험의 자회사로 교보라이프플래닛, 2019. 10. 2. 한화손해보험 자회사로 캐롯손해보험에 대해 각각 보험업 허가

7)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소액단기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사

8) 예시: 동물보험 특화보험사

특화할 경우 신규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⁹⁾함.

- 예를 들어 보험회사(모회사)가 ① 동물보험 특화 보험사(단종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기존 모회사의 동물보험은 판매를 중단하고, ②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소액단기상품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임.

□ 개정안은 이와 같은 보험업 허가규제 완화에 따라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종보험사 또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한 전속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한 명의 보험설계사에게 기존의 종합보험과 상품특화 보험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고, 보험회사 전속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익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규모 특화 보험을 판매하는 자회사의 경우 전속 보험설계사를 두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금융위원회,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2022. 11. 21.

- 첫째, 개정안은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에 맞춰 보험설계사 교차모집 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나, 금융위원회가 2022년 보험업 허가정책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 기준¹⁰⁾으로 기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한 사례가 없음.
-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특화 보험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할 경우 향후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설립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자회사에 대한 교차모집이 허용된 이후에도 신규 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전속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만 교차모집 선택권이 확장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보험회사가 소유한 보험회사 자회사 현황

보험회사(母)	보험회사(子)	소유연도	지분율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2000	63.3%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보험	2009	40.1%
교보생명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2013	100%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2019	59.67%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1989	82.92%

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금융위원회 승인(2025. 3. 19), 지분율 15.9%(예상치)

자료: 금융위원회

10) 2025. 4. 기준

- 둘째,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에도 불구하고 교차모집을 통한 소득 증가가 미비하여 그 수요 및 예상효과가 미비할 우려가 있음.
- 2022년 기준, 현행 교차모집 제도 하에서 생명보험 전속설계사와 손해보험 전속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통해 거둬들인 월평균 소득은 각각 30만원, 6.2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¹¹⁾.
- 현행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육성 및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차모집 보험설계사가 특화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11) 김동겸, 교차모집제도 운영실태와 특징, 보험연구원, 2023. 8. 28.

2. 보험설계사에 대한 가중제재 산정기간 신설(공통)

- 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김상훈의원안	강준현의원안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u>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최근 5년간 이 법에</u> ----- --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받은 날</u> <u>로부터 5년 이내에</u> <u>의 행위로 인하여</u> <u>다시 업무정지 처분</u> <u>을</u>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u>	②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최근 5년간 이 법에</u> ----- -----	②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받은 날로부</u> <u>터 5년 이내에의 행</u> <u>위로 인하여 다시</u> <u>과태료 처분을</u> ----- -----
6. · 7. (생략) ③ · ④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보험업법」 제86조제1항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① 보험설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② 등록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지거나, 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④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¹²⁾.

○ 이 중 ④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기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시간적 간격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추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헌법」 상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¹³⁾이 있음.

12)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보험업법」, 이성남, 2023, 338p

□ 이에 두 건의 개정안은 보험설계사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임.

○ 아울러, 「보험업법」 제86조제2항은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건의 개정안은 위와 유사한 취지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러한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가중제재의 기준을 최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재차 처분이 있는 경우로 할 것인지, 또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가중 제재의 산정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고 있으나, 김상훈의원안의 경우 최초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재차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강준현의원안의 경우 최초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각각 가중하여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초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재차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제재를 하도록 규정할 경우, 실제 위반행위는 최초 처분 이후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재차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중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준현의원안과 같이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제재를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¹⁴⁾.

○ 둘째, 개정안의 시행 이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가중제재 산정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김상훈의원안은 부칙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강준현의원안은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두어 위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준현의원안에 따르면 개정안의 시행 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일이 5년의 가중제재 산정기간 시점이 되나, 입법례¹⁵⁾에 따라서는 기산일의 시점을 법 시행

14) 금융위원회도 동일한 입장임.

15) 「법률 제18622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등록 취소 적용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일로 규정한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 신설(공통)

□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현 행	김상훈·강준현의원안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 <u>보험대리점</u>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 <u>보험대리점</u> ”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136조(준용) ① ----- <u>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u> ----- ----- ---. ----- -----“ <u>보험설계사</u> ”·“ <u>보험대리점</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보험업법」 제134조제1항제1호16)에서는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136조에서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16)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경고·문책 등 경징계를 할 수 없음.

○ 참고로, 현행 「보험업법」은 조문에서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과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구분하여 사용¹⁷⁾하고 있고, 보험설계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¹⁸⁾로 지정¹⁹⁾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등의 행정상의 제재 또는 처벌만 가능한 상황임.

□ 개정안은 「보험업법」 제136조의 준용 규정에 보험설계사를 추가하여

17)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전통적인 근로형태와 구별되지만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의·경고·문책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다만, 현행 「보험업법」 제136조의 준용 규정은 경징계 근거를 포함한 제재 조치(제134조)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및 검사(제133조)도 준용하도록 규정²⁰⁾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경우 자료제출 및 검

20) 「보험업법」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제133조) 등의 조항이 보험설계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제86조에 주의·경고 등 경징계 처분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²¹⁾

-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1)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 (김상훈의원안)

□ 개정안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하로 하되, 해당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로 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과징금) ① -----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단서 신설>	9.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이하.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기초서류”란 보험회사가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를 의미하는데,²²⁾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²³⁾,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 또한,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하의 과징금을, 보험회사의 이사·감사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부과할 수 있도록 함²⁵⁾.

□ 그런데,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제9호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22) 「보험업법」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3)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삭제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4)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제209조(과태료)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3. 보험회사가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와 관계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징금 규모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과정²⁶⁾에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보험업법」 제196조제1항제9호에서 일률적으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로 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위반금액과 과징금 간 비례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를 토대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위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으로 하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현행과 같이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50%를 기준금액으로 하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측면을 볼 때 입법 취지와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제4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은행

26) 감사원,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2021. 7. 5.

법」 제65조의4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 제65조의4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²⁷⁾에 따르면 이러한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금융위원회도 2022년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에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금액(미지급 보험금·이자 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제21대국회에서는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838)을 제출한 바 있음²⁸⁾.

○ 실제 최근 5년 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²⁹⁾을 보면, 부당이득 금액과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아래 표와 같이 (사례1) 위반행위 유형이 유사한 사항에 대해 위반금액(부당이득 금액)이 2배 높으나 기준금액(해당 보험계

2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28) 해당 개정안은 제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

29) 전체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이 적어 과징금 부과액수가 더 낮거나, (사례2) 위반금액에 비해 기준금액이 적어 위반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 등이 있음.

[표 2]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하지 않는 과징금 부과 사례

단위: 백만원

사례	대상 기관	조치 요구일	위반행위 유형	위반 금액	기준 금액	과징금
1	G생명	2024-10-23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12	12	6
	I생명	2024-10-23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6	691	61
2	H손보	2023-06-19	보험금 부지급	262	22	10

자료: 금융위원회

□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기준의 한도를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50% 또는 부당이득의 2배 중 큰 금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³⁰⁾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부당이득의 2배’로 상향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50%와 부당이득의 2배 중 큰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방안은, 부당이득의 규모가 작더라도 연간 수입보험료가 큰 경우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출될 수 있어 감사원 지적 사항 등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5.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김상훈의원안)

- 개정안은 ① 보험회사가 자회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해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②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09조).

현행	개정안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9조(과태료) ①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8의2. 제1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회사 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u>과소·과다하게</u>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0의2. ----- ----- ----- <u>과소하게</u> ----- -----
11. ~ 18. (생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먼저, 개정안 제209조제1항제8호의2와 관련하여, 현행 「보험업법」상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의미³¹⁾하며,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주된 업무 영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해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음.

○ 자회사의 주된 업무가 ① 금융업,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의 업무 등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②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③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인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함³²⁾.

- 보험회사가 이러한 승인을 받거나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31)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32) 「보험업법」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3.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를 하지 않고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³³⁾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한 이후에 해당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추가·변경되는 업무가 자회사의 주된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경우, 위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거나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함³⁴⁾.

- 다만,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조항이 없는 상황임.

○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자회사의 업무 추가·변경 시 준수하여야 하는 승인,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상 자회사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조치라고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 제209조제1항제10호의2와 관련하여, 현행 「보험업법」 제120조는 보험회사가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대통령령으

33)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0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34) 「보험업법」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⑤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하고³⁵⁾,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등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매년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장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의 부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³⁶⁾을 의미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이란 손해보험회사가 예정위험률을 초과하는 비상위험³⁷⁾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³⁸⁾을 의미함.

-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미래에 발생할 보험료 등의 지급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해당 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이익보호에 직결되는 문제³⁹⁾임.

○ 개정안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하

35)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6)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37)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초대형 선박 또는 항공기 사고 등

38)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④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 합계액의 100분의 50(보증보험의 경우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39) 「보험업법」, 이성남, 2023, 593p

게 계상하는 경우와 달리 이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는 보험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미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고의로 과다하게 계상할 유인을 배제할 수 없어, 과실로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⁴⁰⁾에서도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문 의 처
02)6788-5106

40) 금융위원회,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2022. 11. 21.

【참고자료】 기초서류 준수위무 위반 과징금 부과 현황

1. 생명보험사

대상 기관	조치 요구일	기초 서류	위반 행위 유형	위반 금액	기준 금액	과징금
A생명	2020-11-10	약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2,082	6,529	1,138
		약관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 업무 부당	24	13	2
B생명	2021-07-29	약관	보험계약 부당 해지	-	211	42
		약관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당	53	95	18
		약관	보험금 지급 지체	-	92	13
C생명	2021-09-14	약관	보험금 과소지급	190	1,066	213
		약관	보험계약 부당 해지	-	489	97
B생명	2022-02-04	약관	보험금 부지급 등	2,929	804	160
A생명	2022-10-28	약관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 지급	51	987	481
D생명	2022-10-28	약관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 지급	45	7,231	445
E생명	2022-10-28	약관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 지급	20	1,925	198
F생명	2022-10-28	약관	보험금 지급시 적립이자 과소 지급	11	344	105
		약관	장기유지계약 만기보험금 과소 지급	24	1,428	210
G생명	2024-04-16	약관	보험금 부지급	23	12	6
		약관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17	8	3
		약관	보험계약 부당 해지	-	70	13
E생명	2024-04-16	약관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51	24	11
F생명	2024-04-16	약관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27	10	4
H생명	2024-09-11	약관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39	19	9
		약관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17	234	46

대상 기관	조치 요구일	기초 서류	위반행위 유형	위반 금액	기준 금액	과징금
G생명	2024-10-23	약관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17	9	4
		약관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12	12	6
I생명	2024-10-23	약관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28	37	18
		약관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9	6	2
		약관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6	691	61
		약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7	55	27

2. 손해보험사

대상 기관	조치 요구일	기초 서류	위반 행위 유형	위반 금액	기준 금액	과징금
A손보	2020-09-04	약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691	862	178
		약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의무 등 위반	-	0.6	0
B손보	2020-09-04	약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945	4224	789
C손보	2020-09-04	약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	130	82	16
D손보	2021-07-23	약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133	15	9
		약관	보험금 지급 지체	22	11	1
E손보	2021-05-07	약관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	330	90
G손보	2023-02-07	약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21	128	90
		약관	간편심사형 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과소 환급	11	11	5
H손보	2024-04-05	약관	간편심사보험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17	17	8
I손보	2022-10-14	약관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등	7	160	79
H손보	2023-06-19	약관	보험금 부지급	262	22	10
		약관	알릴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지	-	10	4
G손보	2023-06-19	약관	보험금 부지급	41	11	5
		약관	보험금 지급 지체	-	3	1
J손보	2024-09-13	약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등	98	57	4
		약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특약 누락	-	57	3
		약관	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	95	47